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시대 젠더기반폭력의 처벌에 있어서 국제 레짐의 역할*

김민정 ■ 서울시립대학교**

〈국문요약〉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정권은 3년 8개월 동안 국민의 1/4이 죽음을 당하는 잔혹한 정권이었다. 이러한 잔혹은 정권에 대한 처벌은 정권의 패퇴 이후 30여년이 지날 때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냉전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상황과 국내 정치적 맥락,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처벌에 대해서 캄보디아 국가는 소극적이었다. 국제적인 변화와 더불어 국제 사회가 적극적으로 크메르 루즈 정권 심판에 나서면서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으로 캄보디아 재판소 특별법정(ECCC)이 성립되었고 비로소 심판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숨겨져 있던 크메르루즈의 젠더기반폭력 상황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인도주의적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캄보디아 사례는 국가가 자행한 젠더기반폭력은 그 폭력의 속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침묵될 때 결국 국제 레짐이 이를 심판하는 좋은 예를 보여준다.

*주제어: 크메르 루즈, 강제결혼, 강제입신, 캄보디아재판소 특별법정(ECCC), 시민당사자(Civil Party), 국제레짐

I. 서 론

젠더기반폭력이 폭력의 특수한 형태로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젠더기반폭력은 먼저 국제적으로 그 관심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억압이나 착취의 문제는 국내보다는 국제적으로 먼저 주목을 받기 시작

* 이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원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0-아시S-10-20200928-02).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E-mail: mjkim@uos.ac.kr)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1990년대 발칸지역과 아프리카 내전 중 성폭력, 인종청소, 전쟁 중 강간, 난민캠프에서의 강간 등이 광범위하고 잔혹하게 나타나면서 국제적인 관심이 촉구되었다. 이전에도 분쟁 중 젠더기반폭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비인도주의적 다른 범죄에 비해서 큰 관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시에라리온 내전에서 반군에 의한 강간과 강제결혼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면서 그 범위와 정도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발칸반도에서의 분쟁과정에서 광범위한 성폭행과 전쟁 중 강간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범죄에 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촉구되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분쟁 중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젠더기반폭력을 국가가 다룰 수 없다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고 분쟁과 관련한 성적 범죄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여 왔다. 안전보장이사회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왔고 2013년에 결의안 2016과 2122를 채택하면서 이와 같은 관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서 성과 관련한 폭력의 예방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분쟁 중에 발생한 젠더기반폭력과는 조금은 다른 맥락 속에서 발생한 젠더기반폭력에도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시대에 자행되었던 강제결혼 및 강제임신 사례이다. 이 사례는 분쟁 중은 아니었지만 잔혹한 정권에 의해서 국민들의 자유가 박탈되었고 젠더기반폭력이 정권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크메르 루즈가 패퇴한 이후에도 국가 차원에서 과거의 악행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상당한 세월이 흘렀고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200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크메르 루즈 시대의 악행에 대한 청산이 시작되었다.

크메르 루즈 정권은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잔혹한 정권 중 하나였다. 1975년~1979년 1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이 정권은 국민들을 강제 이주 시켰고 강제 노동에 투입했고 고문과 투옥 그리고 처형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1/4에 해당하는 약 150만 명이 사형으로, 그리고 강제노동과 기아로 목숨을 잃었다. 소개, 강제이주, 강제노동, 처형 등의 제노사이드 범죄는 이미 캄보디아 국내 재판에서도 처벌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알려졌다지만 성적, 젠더기반범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2006년 캄보디아 재판소 특별법정(Extraordinary Chamber in Cambodia Court; ECCC)이 설립되고 여기에서 002/02사건에 강제결혼이 포함되면서 많은 시민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이에 대해 증언하였고 이로 인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실체가 다소나마 파악되었다.

본 논문은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시대에 행해졌던 젠더기반폭력이 국제적인

관심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젠더기반폭력이 국내적으로 처벌을 받지 못할 때 국제레짐이 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제적인 규범으로서의 젠더기반폭력 특히 강제결혼과 강제임신에 대한 규범을 살펴보고 크메르 루즈 시대의 젠더기반폭력의 양상을 살펴보면 어떻게 캄보디아에서 국가에 의해서 행해진 젠더기반폭력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국가에 의해서 행해진 젠더기반범죄에 있어서 국제레짐의 중요성을 밝힐 것이다.

II. 젠더기반폭력과 국제레짐

1. 젠더기반폭력

젠더기반폭력은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가해지는 해로운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회적으로 부여된 젠더의 차이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기반한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성관련 범죄는 범죄의 대상이 여성인 경우로 생물학적 성인 여성이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한 통칭이라면 젠더기반범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성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 혹은 여성에 부여된 사회적 성역할에 기반한 범죄라고 정의된다. 이런 점에서 젠더기반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는 다소 결을 달리 한다. 여성이 살해되었을 때 그 여성 살해의 이유가 돈을 목적으로 한 강도일 경우 여성관련 범죄이지만 젠더기반 폭력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현장이 어두운 주차장이고 한밤중이었고 취약한 여성을 일부러 노리고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한다면 젠더기반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젠더기반폭력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여된 여성성, 남성성을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통칭한다. 이런 점에서 남성도 어떤 특정 조건하에서는 젠더기반폭력의 희생자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 동성 간의 폭력이지만 성적 폭력이고 가해자·피해자의 위계질서에 기반한 폭력으로 젠더기반폭력이 될 수 있다. 남자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동성강간, 소아성에 등도 젠더기반폭력의 범위에 포함된다. 젠더기반폭력의 희생자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젠더기반폭력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상당부분 중복되지만 젠더기반폭력의 경우에는 남성들도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된다.

젠더기반 폭력은 평화 시에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그 영향과 발생빈도는 무력분쟁 시에 극대화될 수 있다. 분쟁과 관련된 젠더기반폭력은 전쟁의 전략으로서 혹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전쟁범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혹은 대량학살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국제범죄가 된다. 여성과 소녀들은 특히 성적, 젠더기반 폭력 사용의 대상이 되어 공동체 혹은 인종집단의 민간인들을 모욕하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며 소개하고 강제 이주하려는 목적에 희생될 수 있다. 또는 분쟁 상대집단의 여성 혹은 여아에게 성적, 젠더기반폭력을 가함으로써 분쟁 상대집단의 군인들을 모욕하여 전쟁에서 우위를 가지려는 심리적인 도구로서도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상황은 분쟁 당시에도 여성과 여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지만 분쟁이후에도 그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며 후세대까지 전이되어서 사회에 치명적인 상처로 남을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폭력의 사용은 잔인한 폭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신체상의 심각한 장애를 남길 수 있으며 에이즈나 성병과 같은 질병에 감염되어 남은 생애동안 건강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외상 후 장애를 남기게 된다. 또한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적군이나 반군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것을 적군이나 반군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기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일까지 겪을 수도 있다(Manjoo and McRaith 2011, 14). 종종 성적, 젠더기반폭력의 희생자들은 이러한 폭력을 당했다는 낙인으로 인해서 분쟁이후 사회에의 재통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1993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분쟁 시에 성적, 젠더기반 폭력의 사용을 금하면서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1990년대가 특히 이러한 폭력에 주목하였던 것은 탈냉전과 더불어 분쟁의 국지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곳곳에서 통제되지 않은 인종갈등, 집단갈등이 무력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발생하였다. 발칸반도 구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의 2차례 국제화된 내전이 발생하였고 DR콩고지역, 르완다,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우간다 북부, 체첸 등의 분쟁지역에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성폭력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구유고슬라비아지역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는 1992-1995년 무력분쟁기간동안 보스니아 이슬람 여성 1.2%가 세르비아계 군인들에게 성폭력 당하였고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족과 투치족의 전투가 발생하면서 역시 인종청소의 미명하에 최소 25만 명의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시에라 리온의 내전에서는 반군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납치하여 가사노동과 성노동을 강요하여 노예화하였다. 시에라 리온의 내전기간동안 성적 젠더기반 폭력을 당한 여성은 시에라 리온 여성인구의 33%에 해당하는 27,500명 정도라고

시에라리온 특별 법정(Sierra Leone Special Court)에서 밝혔다(Williams and Opdam 2017, 1281).

이렇게 내전과 같은 무장분쟁 시에 성적, 젠더기반 폭력이 빈번히 나타난 것은 젠더가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젠더화된 관계에는 감정, 가치, 기대, 규범, 역할, 환경 그리고 제도 등이 함축되어 있다. 젠더는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주요 범주로서 ‘여성’이라고 하는 젠더는 힘의 열세, 자원의 열세, 영향력의 열세를 의미한다(Russo and Pirlott 2006, 180). 그래서 첫째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젠더기반폭력이 사용되는 것이다. 강간과 같이 여성에 대한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여 직접적이며 상징적으로 지배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민간인들에게 자신들의 군대가 우위이며 지배적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반발의 가능성을 줄여서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 성폭력이나 젠더기반 폭력인 것이다. 이를 통해서 민간인들에게 공포와 모욕을 동시에 안겨주어서 심리적으로 반발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자신들의 군사적 우위를 확인받는 것이다. 지배를 영속화 하기 위해서는 새로 태어나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지배하에 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성폭력, 젠더기반폭력을 활용하여 강제임신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신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크메르 루즈의 강제결혼 및 강제임신도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인민을 창출해내고 크메르 루즈를 위해서 복종하는 인민들을 만들려는 일종의 장기적인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는 적에 대한 상징적인 지배로서 적을 여성화하는 방식이다. 젠더기반 폭력은 반드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크메르 루즈의 경우에도 남성들도 강제결혼의 고통을 당하였듯이 많은 내전에서 남성 포로들에 대한 성폭력, 남성 포로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가학적 행위 등에 대한 강요 등은 모두 이러한 적을 여성화하는 방식이다(정지영 2004). 즉 사회에서 구조화되어 있는 젠더적 이분법을 무장분쟁 속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여성성과 남성성의 이분법 속에서 남성성은 승자, 우월한 자, 지배자의 개념으로 연결시키고 여성성은 패자, 열등한, 피지배자의 개념으로 상징화한다. 여기에서 분쟁 과정 중에 열세에 놓여있는 군인에게 혹은 포로들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하거나, 옷을 벗겨두고 방치하거나 성행위의 자세를 취하게 하여 사진을 찍거나 동성강간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열세에 놓여 있는 집단이나 포로들을 성적 관계에서 여성화된 존재로 표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남성포로를 여성화하여 모욕하여 지배를 공고히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젠더기반폭력이 분쟁집단에 의해서 혹은 한 국가에 의해서 행해질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국제사회의 개입 뿐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 레짐의 형성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은 일반적으로 국제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국가들에 의해 합의된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규칙을 지닌 제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국제적인 관습도 포함된다. 국제 레짐에 대한 정의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에서의 유형, 무형의 국가들간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젠더기반폭력의 경우 이러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인 합의를 말한다.

성적,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러한 폭력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199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3년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은 젠더기반폭력이라는 광범위한 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의하고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가 젠더기반 폭력의 중요한 현장일 수 있음을 확인한 최초의 국제문서이다. 이 선언 1조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육체적, 성적 심리적 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혹은 여성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 혹은 이러한 행동을 하겠다는 위협, 협박, 강제, 자유의 자의적인 박탈 등으로 이러한 행위가 공적인 혹은 사적인 영역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김양희 2013, 4). 이 선언은 분명하게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명시하였다¹⁾.

젠더기반 폭력은 국제법과 국제협약에 의해서 보호받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를 수반한다. 전통적인 가치나 규범, 사회제도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영속화하는 국가도 있지만 젠더기반 범죄의 대다수는 국내법에 저촉될 수도 있고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의 2조에서는 국제 공동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일반적인 유형에 대해서 공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그 정의는 가족 내에서도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포함하지만 이것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타, 여아에 대한 성적 학대, 지참금 관련 폭력, 부부관계에서의 강간, 여성성기절제 및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위해, 착

1) 기본적으로 1979년 유엔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을 채택하였는데 여기 6조에는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할 것을 처음으로 문서에 확인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전까지 때로는 은밀하게 진행되어 주변에서 파악하기 어려웠고 때로는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어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인식해오던 잘못된 사회적 시각이 퍼져있었다. 이 협약에서는 성매매, 인신매매를 여성에 대한 차별로 정의하였지만 보다 광범위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이 촉구된 것은 1990년대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진 셈이다.

취와 관련된 폭력, 성희롱, 직장과 교육기관에서의 위협, 강제임신, 강제 낙태, 강제불임화, 여성인신매매, 매춘강요,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거나 용납된 폭력 등이다.

2. 국제규범에서의 강제결혼

원래 국제법 위반행위는 민사책임이 원칙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임시국제형사재판소를 세워 전범들을 형사 처벌한 사례가 좀 있을 뿐, 국제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민사책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다수의 국제 무력분쟁과 비국제적인 무력분쟁이 발생하면서 분쟁이후 평화정착 과정에서 분쟁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국제 레짐의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무력행사에 대한 국가 책임과 더불어 무력행사 및 평화과포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이 진행되었다. 전쟁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전후 국제법질서는 제네바 4개 협정(1949)인데 이 협정에서는 특정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국내 재판소에서 처벌하는 것을 규정하였지만 2차 대전 이후 계속되는 무력 분쟁 이후 '불처벌(impunity)'이 지속되면서 관행화되자 이를 불식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 레짐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유재형 2008, 540). 이러한 국제 사회의 합의는 1990년대에 구유고슬라비아국제재판소, 르완다국제재판소 등과 같은 특별(ad hoc) 국제형사재판소로 운영되어 왔는데 상설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이 논의되면서 1998년 7월 로마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구유고슬라비아국제재판소나 르완다국제재판소와 같은 특별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설립된 반면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는 다자간국제조약에 기초하여 조약 체결국간의 합의에 기초한 국제기구이다. 다만 여기의 근간이 되는 로마협정(Rome Statute)은 국제 규범으로서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국내재판소든, 다른 특별국제형사재판소 등 그 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로마협정은 기존의 전쟁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중대한 범죄(협약 전문)'에 대한 처벌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4개의 범주가 해당된다. 집단살해범죄(crime of genocide),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가 그것이다. 동협정 전문에는 20세기 수백만의 아동, 여성 및 남성이 인류의 양심에 깊은 충격을 주는 상상하기 어려운 잔학행위의 희생자가 된 것에 기초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유재형 2008, 542). 즉 젠더기반폭력의 처벌이 그 중요한 목적이며 이러한 폭력행위는 위의 4가지 범주에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협정이후의 많은 국제형사재판은 이 로마협정을 근거로 하여 젠더기반폭력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처벌하여 왔다.

젠더기반폭력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행해진 젠더기반폭력의 유형은 강제결혼과 강제임신이다. 강제결혼이 처음으로 국제레짐에 의해서 불법으로 인정받은 것은 시에라 리온의 사건에서이다. 2008년 2월 22일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정 항소심에서 무장혁명위원회(Armed forces Revolutionary Council)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강제결혼을 국제형사법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서 인정하였다. 이 결정은 알렉스 캄바 브리마, 브리마 바지 카마라, 산티지 바르바르 카누에 대한 강제결혼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뒤엎은 판결이었다(Jain 2008, 1013). 피고인 3명은 AFRC 군대 지휘관으로서 1심 재판에서 살인, 강간, 성노예, 소년병 징집 등의 전쟁 범죄 및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강제결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시에라 리온의 내전 상황에서 강제결혼은 성노예 범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젠더기반 폭력이 국제법 상의 범죄로 인정되어 왔지만 강제결혼이 젠더기반 폭력의 한 형태로서 국제법상 범죄로 인정된 것은 시에라 리온 사례가 처음이었다. 이전에는 강간이나 강제임신, 성노예등이 국제적이 관심을 받고 처벌을 받았지만 강제결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이것은 비단 시에라 리온의 사례에서만이 아니고 다른 사례에서도 국제재판소나 국내 재판소에 어디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못했다. 성노예나 강간 등 다른 젠더기반 범죄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졌을 뿐이다. 시에라 리온 사례에서 강제결혼이 별도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인정된 것은 그만큼 젠더기반폭력을 처벌해야한다는 국제 사회의 촉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제결혼을 국제법에서 강간이나 기타 다른 젠더기반범죄와는 별도로 범죄로 구성하는 논리는 몇 가지가 있다(Gangoli et al. 2011, 13). 첫째는 국제사회는 결혼과 가족을 보호해야한다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결혼은 국제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왜곡(perversion)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결혼은 결혼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없을 경우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강제결혼은 중매결혼(arranged marriage)과 다른데 중매결혼은 결혼당사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를 자기 부모에게 위임하는 것이지만 강제결혼은 결혼당사자가 선택할 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강제결혼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가 된다. 중매결혼은 심지어 결혼당사자 중 일방

이 정신적 질병 때문에 동의 혹은 반대를 할 수 없는 상황과 같이 동의가 불분명하거나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선택한 동기로 자기 자녀의 안위를 위해서 혹은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유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당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002/02 사건의 피고인들은 크메르 루즈 시대의 강제결혼이 원래 캄보디아 전통적인 중매결혼에서 부모가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크메르 루즈 정권이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크메르 루즈에 의한 강제결혼은 결혼당사자가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식들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배우자를 대신 결정해준다는 전제에 전혀 맞지 않는다. 강제결혼을 시행했던 크메르 루즈 당국은 결혼당사자의 안위와 행복을 원하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당국의 필요에 따라 결혼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혼을 규제했던 것이다.

3. 국제법에서의 강제임신

여성에게 임신을 강제하고 출산을 강요하는 행위는 상당히 오랫동안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밀로스의 남자들을 죽이고 밀로스 여성들을 성노예와 강제임신으로 동화시키려했던 아테네로부터 스코트랜드 민족 체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강간과 강제 임신 정책을 사용하였던 잉글랜드에 이르기까지 강제임신은 문화적으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의 통일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용되어왔다(Carpenter 2000, 213). 강제임신은 인간 삶의 재생산을 통제하려는 의도의 정책이다. 보다 많은 노예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여성노예를 강간하는 일들이 빈번하였고 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의료 실험용으로 수정란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 여성들을 강제임신시키는 일들이 있었다(Wing and Merchan 1993). 이렇게 광범위하게 시대를 초월하여 강제임신이 있어왔지만 강제임신이 국제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정이 채택되고 난 이후였다. 이어서 동티모르에서의 심각한 범죄에 대한 특별 재판소 규정(Special panels for serious crimes in East Timor),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규정에서 강제임신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로마협정에서는 강제임신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이면서 동시에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로마협정 7조 1항, 8조 2항). 로마협정 7조 2항은 강제임신을 '어떤 인구의 인종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혹은 다른 심각한 국제법

위반을 가져오는 강제로 임신하게 하기 위해 여성을 불법으로 감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강제임신은 두 가지 분리된 행동을 포함한다. 첫째 임신의 강제로 강간이나 불법적 의료조치로서 임신하게 만드는 행위이며 두번째는 불법 감금으로서 임신이 완성되도록 여성을 강제하는 것이다.

로마협정에서의 강제 임신은 특정 인구의 인종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혹은 국제법의 심각한 침해가 자행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²⁾. 이러한 추가적인 필요요건의 명시는 고통받는 여성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특정 인종집단에 대한 범죄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국제재판 혹은 혼합형사재판소에서 강제임신을 기소한 예는 없다. 시에라리온의 브리마 심판에서 재판부는 강제결혼의 여성희생자³⁾들이 출산을 강요받았고 이렇게 출산된 아이들을 강제로 양육하였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강제결혼 혐의는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Troy 2010, 539). 국제형사법 관계자들은 강제 임신을 국제 형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의 침해보다는 성폭행이라는 범죄의 결말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크메르 루즈 시대의 강제임신의 경우에도 별도의 위반으로 보지 않고 강제 결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III. 크메르 루즈 시대의 젠더기반폭력

1. 강제이주, 강제 노동, 제노사이드

크메르 루즈(Khmer Rouge)라는 말은 1960년대 캄보디아 통치자였던 씨이하누(Norodom Sihanouk)가 캄푸치아공산당을 일컬어 별칭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명칭이 캄푸치아공산당보다 더 널리 사용되었다. 이 명칭은 단지 캄푸치아공산당을 지칭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후 캄푸치아공산당이 정권을 잡아서 통치했던 3년 8개월 기간을 통칭하는 단어로도 널리 사용된다. 캄보디아에서는 프랑스로부터 독립이후 이데올로기와 정책에 기반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경쟁하였는데 씨이하누와 함께 크메르 루즈는 그 가운데 중요한 정치세력이다(부경환 2011, 11).

2) 이러한 추가 조건이 명시된 것은 로마협약 협상과정에서 이 조항의 추가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로비와 몇몇 국가들의 반대 때문이었다(Lobato 2016, 7). 이 조항은 여성의 고통보다는 특정 인종집단에 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들은 흔히 'Bush wives'라고 불린다. 즉 풀숲에서 강간을 당하고 반군들에게 납치되어 그들의 성노예로, 가사노예로 감금되었기 때문이다.

크메르 루즈의 통치⁴⁾는 1979년 1월 베트남군에 의해서 패주할 때까지 3년 8개월 동안 캄보디아를 통치하였다. 크메르 루즈는 농민계급중심으로 국가를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농업사회로 전환하려고 시도하면서 기존의 사회를 완전히 해체하는 작업을 전개하였다. 크메르 루즈는 고도로 발달된 관개 시설과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성했던 과거의 제국과 같은 사회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부경환 2011, 16). 농업 생산량을 확대하고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인구를 북서부 곡창지대로 강제이주시켰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최대 도시 프놈펜의 인구를 북서부 곡창지대로 강제이주하여 농업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썼다. 이러한 프놈펜 소개과정에서만 1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헥타르당 당시 쌀 수확량이 1t도 채 되지 않았으나 이를 3t까지 증산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서 농촌 협동농장에 배치된 국민들은 하루 종일, 일 년 내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농사를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해서 관개시설 및 댐과 같은 공사에도 박차를 가하여 많은 인구가 전국 곳곳의 공사현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이들 중 대부분은 도시에서 이러한 육체노동을 전혀 해보지 않던 국민들이어서 많은 수가 과로와 영양실조, 작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강제이주, 강제노동에 기반을 둔 경제적인 재편과 더불어 문화적으로도 사회의 급진적 개혁을 추구하였다. 크메르 루즈는 봉건적 제도라고 불렀던 이전의 사회적 관행을 반혁명적이라고 제단하고 이를 완전히 뿌리뽑아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려하였다. 봉건적 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가족중심의 생활방식, 종교적 관행, 개인주의 등이었다. 학교를 폐쇄하였고 공산주의 선전 학습 이외에는 모든 교육도 금지된 철저한 공산주의 교육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종교행위와 신앙활동도 당연히 금지되어서 사원이 폐쇄되고 재교육장이나 공동취사장으로 활용되었다. 승려들도 승적이 박탈되고 농장에 배치되어 강제노동을 하게 되었다. 기존의 직업이나 신분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고 가족도 해체되어 성별, 나이에 따라서 다른 협동농장으로 보내졌다. 당에서 허락하지 않은 자유연애나 결혼은 금지되었으며 철저하게 이동의 자유가 박탈되는 사회였다.

크메르 루즈의 통치 방식은 크메르 루즈 공산당의 상임위원회를 앙카르(Ankar, 조직이라는 뜻)라고 지칭하면서 캄보디아 사회의 모든 개개인, 모든 부분까지의 완전한 통제를 위임하였다(Strasser et al. 2015, 27). 앙카르는 종종 파

4) 본 글에서는 일반적인 명칭인 크메르 루즈로 통일할 것이다.

인애플에 비교되곤 한다. 파인애플 기둥에 수많은 ‘눈’같은 모양이 있는데 이것이 앙카르의 무수한 감시조직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앙카르가 혁명의 적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은 재교육 센터나 안전센터(감옥)로 보내졌고 이 기관들은 캄보디아 전역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었다. 이 기관들에서는 크메르 루즈 간부들이 희생자를 비인도적으로 대했고 앙카르를 배신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문도 서슴치 않았다. 결국 희생자들은 전국적으로 소재하였던 ‘킬링 필드’에서 처형되었다. ‘적’으로 간주된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크메르 루즈 조직 내에서도 스파이들이 색출되었고 내부적인 숙청과정에서 노동자, 정부 장관들, 군장성들, 공산당내부 인사들까지도 망라되었다. 약 1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죽음을 당하였다.

2. 강제결혼

크메르 루즈 시대 이전 캄보디아의 결혼은 커플의 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거룩한 의식이었고 특히 신부와 신랑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중매결혼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행해졌지만 이 경우에도 신부와 신랑의 암묵적인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결혼은 가족과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며 결혼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결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루어진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며 가족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며 이 탄생은 주변의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면서 이루어져야하는 새로운 출발이었다(de Langis ed. 2015, 20~22).

1976년부터 크메르 루즈는 엄격한 규칙하에서 결혼 규제정책을 추진했다(Pouchaud 1989, 166). 결혼은 정해진 카테고리 내에서만 허가되었다. 즉 젊은 장교(남녀 모두 해당)는 같은 계급 내에서만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었다. 자신과 같은 병사이거나 아니면 여성경비대원 혹은 지역 기동대원, 혹은 여러 조직에 속해있는 관리들로부터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들은 ‘신인민’⁵⁾과는 결혼할 수 없었다. ‘구인민’은 일반적으로 같은 구인민과만 결혼할 수 있었지만 때로 구인민은 자신이 원하는 개별 ‘신인민’을 지정하여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

5) 크메르 루즈 이전 프놈펜 등의 도시에 거주하던 거주민으로 크메르 루즈는 이들을 신인민으로 분류하고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켜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반면 구인민은 크메르 루즈 이전부터 농촌에 살던 농민을 뜻한다.

었다. 일반적으로 신인민들은 크메르 루즈가 배우자를 정해서 결혼을 시켰다. 한 연구에 의하면 엄격하게 규제된 결혼 규제정책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나 다른 조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크메르 루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결혼이 추진되었다(LeVine 2014, 83).

이러한 결혼정책과 더불어 크메르 루즈 치하의 결혼은 집단혼례식으로 치루어지면서 어떤 전통 예식도 없이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결혼한 커플들은 그들의 결합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되었고 정권은 그들이 이 규칙을 따르는지 감시하였다. 크메르 루즈는 강제 이주, 강제 노동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 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구성장이 필수적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강제로 결혼시켜서 국민을 재생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또한나 크메르 루즈 결혼 규제 정책의 목적은 크메르 루즈의 ‘혁명적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새로운 시민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크메르 루즈는 국가를 완전히 새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에 살고 있던 시민들을 강제로 지방으로 이주하여 농사현장에 투입하였으며 댐건설과 관개시설 등의 사업에 강제노동시켰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국가건설에 매진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려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고 국가 중심의 전체주의적인 통치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크메르 루즈는 이미 오랫동안 캄보디아의 관습과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크메르 루즈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크메르 루즈는 지식인들을 처형하였고 학교를 폐쇄하고 재교육 센터와 같은 크메르 루즈식의 ‘혁명적 인간형’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국민들을 단기간에 탄생시켜서 인구성장을 이루면서 동시에 혁명을 적극 지지하는 국민들로 국가를 새로 만들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Lobato 2016, 13). 이를 위해서 낡은 전통적 결혼을 없애고 개인적인 연애 감정이나 연대에 의존하는 결혼가정이 아니라 크메르 루즈에만 충성하는 가족의 탄생이 결혼규제정책의 진정한 의미였다고 할 수 있다.

크메르 루즈가 결혼을 강제한 커플들은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은 이전과는 달리 부모나 가족, 친지의 참여없이 협동농장 단위, 혹은 기타 노동단위, 지역단위로 관계자들만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결혼식은 적게는 서너 커플, 많게는 수백 커플이 동시에 참여하는 합동결혼식의 형태였다. 대부분의 결혼하는 커플들은 결혼 당일에 결혼을 통보받거나 혹은 하루 전에 결혼을 통보받고 결혼하게 될 배우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끔은 이러한 결혼을 거절하여 도망하거나 완강히 버티는 경우도 있었지

만 대부분은 억압적인 분위기 혹은 협박, 그것도 아니면 너무 갑작스러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다. 결혼식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근처에 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작은 집에 가서 며칠을 보내게 되며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성관계를 하는지 **chlob**(지역민병대)에 의해서 감시를 받았다. 그 이후 다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고 1달에 한번이나 혹은 두 달에 한번 정도에 다시 만나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고 자녀가 생기게 되면 같은 협동농장이거나 일터로 배치받게 되고 근처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결혼생활이 이루어졌다. 이들 대부분은 결혼서류에 사인을 하거나 어떠한 법적인 문서도 없이 살았다. 크메르 루즈 정권이 끝나고 나서 자신들의 가족들과 재결합하게 된 이후에 크메르 루즈 시대의 강제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미 자녀가 있었거나 혹은 캄보디아 전통사회의 문화에 따라 한번 결혼하여 같이 살면 헤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거나 혹은 결혼생활 과정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잘 지냈기 때문인 경우도 없지 않다. 헤어져서 자신의 가족과 결합하여 크메르 루즈 시대 강제결혼했던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은 어떤 법적 절차도 필요 없었다.

3. 강제임신

강제결혼과 결혼내에서의 강간은 결국 모두 강제임신을 위한 것이었다. 즉 앞서에서도 언급했듯이 크메르 루즈의 결혼 규제정책은 인구증가, 혁명적 일꾼의 재생산을 위한 정책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임신과 연결되지 않는 강제결혼이나 결혼내에서의 강간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또한 대다수의 강제결혼 대상자들은 결혼이 결국 임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크메르 루즈 시대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극심한 노동 속에서 임신을 하거나 혹은 자녀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de Langis 2015, 17). 특히 여성들에게 임신은 성폭행의 눈에 보이는 피해보다도 훨씬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이 있다. 충분한 양식도 없고 의료시설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는 것은 임신하는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Lobato 2015, 17; LeVine 2010, 77). 대부분의 여성들은 임신중에도 대단히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고 대부분의 임신여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아기를 출산해야했다(LeVine 2010, 72). 많은 사례들에서 임신한 여성들의 끔찍한 영양상태와 고통을 보여준다. 또한 임신기간중 출산이후

에 전통적인 의식들이 전혀 없이 강제노역을 수행한데서 오는 고통이 극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화적인 괴리는 일종의 영적 기반 불안감(*spirit based anxiety*)과 발달 지체(*developmental setback*)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LeVine 2010, 33, 57)

임신중절은 여성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었다. 기본적으로 크메르 루즈 정권에서는 합법적 임신 중절이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은 위험한 불법적 방법에 의존해야 해서 잘못하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했다(Strasser et al. 2015, 78).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은 종료나무 줄기를 이용하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혹은 몸에 해로운 약을 먹는 등을 시도하였다.

출산과정에서 사망하는 임신부의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LeVine 2010, 33, 77). 열악한 영양상황 때문에 자연유산도 많았고 사산의 비율도 높았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임신한 여성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되어 이후에도 오랫동안 여성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나 의학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신 여성들은 무방비의 상황 속에 그대로 내버려졌다. 또한 중절 시도가 실패하여 출산하게 된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애증의 감정, 즉 원하지 않는 결혼과 강제 성관계, 이로 인한 임신의 결과, 임신과정 중의 중절 노력의 실패 등 많은 복합적인 감정이 자녀 속에 투영되어서 자녀를 볼 때마다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과 애절한 마음,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워하고 부담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괴로운 심정을 가지게 된다(Lobato 2015, 18).

게다가 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가사노동의 어려움까지 동시에 지게 되어서 이중삼중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자기개발과 관련된 교육이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여성의 지위 하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크메르 루즈 몰락이후 강제결혼한 남편과 헤어지거나 혹은 남편이 죽은 경우에 여성들은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전담하게 되어 더욱 어려움이 커졌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아무런 애착관계없이 결혼하여 당국의 강제로 성폭행당하고 그 결과로 임신하게 되었고 열악한 영양상태 속에서 죽을 만큼 힘들게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혼자 남겨진 여성들은 자녀와 함께 크메르 루즈 정권이 준 극단적인 괴로움이 단지 크메르 루즈 정권 기간동안에 그치지 않고 평생동안 그녀들의 삶을 옥아메는 울가미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강제결혼, 결혼내 강간, 성관계의 강요, 강제임신, 강제출산에 이르기까지 크메르 루즈의 결혼 규제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고통과는 별개로 자녀들은 태어났고 이로 인해서 인구는 증가를 보였다. 내전 기간동안 100만 명이 죽었고 크메르 루즈 정권 초기 강제이주, 노역, 처형 등으로 인해서 150만 명이 죽음을 당하여 인구가 급속히 하락한 상황에서 크메르 루즈의 결혼 규제정책은 10년~15년 사이 캄보디아의 인구를 700만 명에서 2천만 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73년까지 출생율이 떨어지고 있었으나 크메르 루즈 집권이후 1976~1978년 사이 출산율이 1000명당 20~25명으로 높아졌고 1977년 중반~1978년 사이에는 1000명당 50명으로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Meng-Try Ea 2017, 8).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크메르 루즈 기간 동안 남성들은 강제결혼에서 여성들을 임신시키도록 강요되었고 여성들은 극심한 기아와 강제노동, 나쁜 건강상태, 공포 속에서도 임신과 자녀출산을 경험하도록 강요되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ECCC재판과정에 참여했던 몇몇 시민당사자들은 그들의 결혼식과 그 이후에 앙카르를 위해서 강제로 아이를 출산할 것을 약속하도록 강요되었다는 것이다. 한 여성은 앙카르는 우리가 자녀를 낳아 혁명에 바치기를 원했고 우리는 국가건설을 위한 자녀를 낳도록 요구받았다고 증언했다(Grey 2019, 475). 다른 여성은 '내 임신은 나의 결정이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앙카르가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정말로 임신하고 싶지 않았다.' 또다른 여성은 '나에게 성관계로 결혼을 완성하라고 강요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아이를 낳아야했다. 나는 정말 말랐고 귀리죽밖에 먹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랐다. 내 속에 힘도 없었다'라고 증언했다(Grey 2019, 475).

IV. 젠더기반폭력 처벌에 있어서 국제 레짐의 중요성

1. 크메르 루즈에 대한 불처벌 상황

크메르 루즈가 퇴패하고나서 캄푸치아인민공화국 정부가 성립하였지만 이 정부는 크메르 루즈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반정부연합세력들과 침예화된 정치적 갈등을 벌이고 있었다. 각 정파는 외국 세력과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크메르 루즈의 만행을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

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국제사회도 변화되면서 캄보디아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쳤던 외부세력들이 중립을 선언하면서 캄보디아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캄보디아는 자체적으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동력도 없었고 이를 위한 지지세력도 없었기 때문에 크메르 루즈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최고지도자들이 크메르 루즈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청산은 더욱 어려웠다. 현 정부의 총리, 국회의장, 상원의장 등 최고위직 정치지도자들이 크메르 루즈 시대 캄푸치아 공산당의 사령관 혹은 군인출신이어서 크메르 루즈 시대에 대한 철저한 청산은 어려웠다(조영희 2011, 21). 심지어 전 국왕이었던 씨이하누는 크메르 루즈 시대에 국가원수를 지냈고 크메르 루즈가 패퇴한 이후에는 크메르 루즈 세력과 연합하여 1980년대 내내 캄푸치아인민공화국과 대치해왔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재임하던 1996년 이영사리가 신정부에 충성을 약속하자 그를 사면했고 크메르 루즈 간부들을 그의 정부에 영입하기까지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메르 루즈 패퇴 이후에 국내적으로 크메르 루즈시대의 만행을 처벌하는 것은 힘들었다.

또한 크메르 루즈 패퇴이후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신냉전체제에 휘말려들어갔다. 친베트남과 사회주의 세력들이 베트남 군대의 지원으로 크메르 루즈 정권이 붕괴하자 소련식 사회주의 정권이 캄보디아에 자리잡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미국은 크메르 루즈를 지원하였다(조영희 2011, 209). 이것은 1980년대 유엔의 캄보디아 대표의석이 크메르 루즈가 속한 민주캄푸치아연립정부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은 크메르 루즈 패퇴이후에도 재정적으로 크메르 루즈를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의 갈등은 결국 국제적인 냉전의 축소판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결국 1989년 소련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진행되면서 캄보디아에 개입했던 외국의 세력들은 중립을 선언하면서 물러나게 되자 비로소 크메르 루즈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된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의 국내적 상황과 정치문화도 국내적으로 크메르 루즈의 젠더기반폭력을 처벌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캄보디아는 공동체적인 가치를 상당히 중시하여 개인보다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 연장선상에서 권위에 대한 복종을 당연히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패퇴한 권위라고 하더라도 그 정권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여기에 오랜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정의나 보복보다는 화해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왈가왈부하

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반기지 않는 문화를 유지하여 왔다. 여기에 당면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의 가장 큰 난제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사 청산은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크메르 루즈가 패퇴하고 30여년이 지날 때까지 그 정권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정권이 행한 젠더기반폭력의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자신들에게서 그치지 않고 자녀세대로 전이될까 두려워하였다. 자신들의 불행한 강제결혼과 강제임신 사실을 자녀들이나 주위에서 알까 두려워하면서 긴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던 것이다.

2. ECCC의 설립과 성적, 젠더기반폭력의 처벌

탈냉전과 더불어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서서히 크메르 루즈에 대한 처벌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유엔은 캄보디아 국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캄보디아 정부와 크메르 루즈에 관한 처벌에 관하여 협상을 전개하였다. 재정적인 문제와 재판소의 성격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마침내 2007년 ECCC가 캄보디아에 설치되었다⁶⁾. 이에 앞서 2001년 캄보디아 의회에서 크메르 루즈 재판소 설립을 위한 국내법이 통과되었다. 국제적으로 이 문제가 다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캄보디아 정부에서 국내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크메르 루즈 재판이 무산되지 않도록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국가들이 비공식적 연합을 만들어 유엔을 설득하고 많은 부분에서 캄보디아에 양보를 하여 2004년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운영자금 문제로 다시 협상이 전개되어 결국 2007년에 가서야 유엔이 4,300만불을 지원하고 캄보디아가 1,300만불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재판소 설립이 확정되었다(조영희 2011, 210).

강제이주 및 강제 노동, 제노사이드의 강압적인 통치에 대해서는 이미 1979년 크메르 루즈가 권좌에서 패주한 직후인 1979년 8월 크메르 루즈의 총리였던 폴 포트와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었던 이엥사리를 재판하는 인민혁명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이로 인해서 사형을 선고받았다⁷⁾. 이후에도 캄보디아 의회에서는 크

6) ECCC의 설립배경에 관하여는 Scheffer 2008을 참고하라.

7) 그러나 이 판결은 당시에 아직까지 캄보디아 내에서 크메르 루즈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폴 포트는 1997년 체포되어 연금되어 재판을 받던 중 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게릴라전으로 캄보디아 정치에 막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폴 포트라는 명칭은 이름이 아니라 Political Potential(정치적 잠재력)이라는 그의 별칭이며 본명은 살롯 사(Saloth Sar)이다.

메르 루즈와 관련된 조직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미국 의회에서도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에 대한 심판 법안이 통과되면서 제노사이드와 관련된 범죄는 상당부분 많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젠더기반폭력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재판소 특별법정(Extraordinary Chamber of Cambodia Courts; ECCC)에서 재판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광범위하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크메르 루즈 시대의 성적, 젠더기반폭력행사에 관한 것이 ECCC 창설 이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79년 폴포트와 이엥사리의 국내 재판 동안 크메르 루즈의 군인들이 여성을 강간했다는 직접 혹은 전문(傳聞)의 증언이 있었다. 강제로 옷을 벗기고 혹은 강제 결혼을 통해서 강간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젠더기반 폭력은 시민당사자 변호사들이 이 문제를 가시화할 때까지는 ECCC의 활동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2006년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크메르 루즈의 혐의는 학살, 고문, 강제노동이 민주적 캄푸체아 시기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는 것이고 성적, 젠더기반 폭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크메르 루즈가 엄격한 도덕적 규범과 성중립적인 통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즉 혼외의 연인사이든 혹은 성폭행이든 간에 혼외 성관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성폭행이 광범위하게 억제되었을 것으로 상정되었다. 그래서 처음 ECCC에서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 젠더기반 폭력은 우선순위에 놓여있지 않았다. 공동검사는 수많은 형사사건들을 다루어야 했고 형사범죄 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샘플만을 선택해서 다루어야 했다. 특히 ECCC의 모든 조사자와 통역자들은 당시 남성이었고 성적 및 젠더기반 범죄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전혀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당시 공동검사였던 앤드류 켈리(Andrew Cayley)는 검사사무실에서 젠더기반 범죄를 무시한 적은 한번도 없고 여성 희생자를 중요하지 않게 응대한 적은 없다고 말했지만 시민당사자측 변호사였던 실케 스투진스키(Silke Studzinsky)는 이런 말들이 단 한번도 실천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Elander 2016, 167). 스투진스키는 ECCC에서 희생자 즉 성적 젠더기반 폭력을 겪은 많은 희생자를 지원하면서 7년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성적, 젠더기반 폭력을 002/02 사건의 주요 이슈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공동검사와 공동수사판사는 성적, 젠더기반 폭력에 대해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⁸⁾.

8) ECCC재판에는 모두 4개의 사건이 있다. 사건 001은 크메르 루즈의 S-21 안전센터의 소장이었던 Kaing Guek Eav alias Duch에 대해 안전센터에서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이었다. 두번째 사건은 2010년 9월 15일 크메르 루즈 의회의장 및 크메르 루즈 공산당 부서기장이었던 누온 체아와 크메르 루즈 국가수반이었던 키우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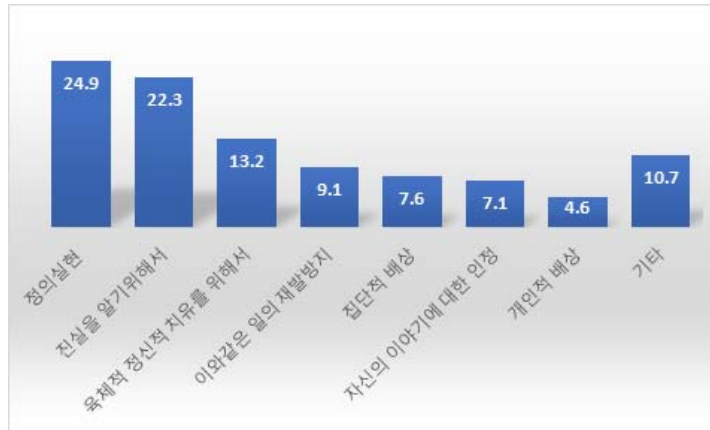
이렇게 성적, 젠더기반 폭력에 대해서는 ECCC의 002/02 사건에 대한 재판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잘 알려져있지 않았다. ECCC에서 002/02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재판에 시민당사자(Civil party)가 참여하여 진술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적, 젠더기반 폭력이 자세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시민당사자가 재판에 검사나 변호사와 같은 권리로 참여하게 된 것은 ECCC가 국제 형사 재판 역사상 처음이었다. 시민당사자는 대규모 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지위인데 이 지위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변론 및 기소와 유사한 광범위한 참여 권한을 가진 공식 당사자로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다(Stegmiller 2014)⁹⁾. 이전에 국제 형사 재판에서 대규모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증언을 직접 하고 싶었지만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변호인들을 통해서, 혹은 변호인이나 검사의 요청에 의해서 증인으로 참석하였을 뿐이다. 시민당사자는 검사나 혹은 변호사와 유사한 권리를 가진다(Herman 2013). ECCC 내부 규정에 의하면 시민당사자의 참여 목적은 첫째 ECCC 사법권 내에서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범죄에 책임있는 혐의자에 대한 형사 소송절차에 참여

판에 대한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제노사이드, 제네바 협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이엥 사리와 령 티리트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이들은 2013년에 죽어서 재판까지 가지는 않았다. 이 재판은 내용이 방대하여 두개의 재판정으로 나뉘었는데 002/01은 1975년 4월 프놈펜 인구의 강제이주와 다른 지역으로의 강제이주와 관련된 것이다. 002/02는 삼파 베트남인에 대한 제노사이드, 강제결혼과 강간, 내부숙청, S-21 안전센터, 크랭 타 찬 안전센터, 오 칸생 안전센터, 프롬 크라울 안전센터, 1월 1일 댐 현장, 탐퐁 크낭 공항 건설현장, 트랑퐁 트마 댐 공사현장, 트람 록 협동농장, 불교인에 대한 대우, 이전 크메르 공화국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었다. 003사건은 크메르 루즈 해군사령관이었던 메아무스(Meas Muth)에 대한 재판으로 제노사이드행위에 관한 것이다. 004사건은 크메르 루즈 중간관리였던 임 차엠(Im Chaem), 아오 안(Ao An), 임 티트(Yim Tith)가 기소된 사건으로 캄보디아 남서지역 및 북서지역에서의 잔혹행위와 관련된 사건이다(<https://www.eccc.gov.kh/en/case-load>, (2020/10/10일 검색)).

- 9) ECCC는 피해자의 재판참여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의 실질적인 필요성과 사법적 회의주의는 시민 당사자 메커니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지속적으로 참여 권리를 제한되었다. 첫째, ECCC의 내부 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원래의 시민당사자 메커니즘이 크게 변경되었고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서 실행된 것과 유사한 피해자 참여 형태가 생겨나면서 시민당사자의 진정한 의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ECCC 판사의 사법 결정과 내부 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캄보디아 형사 소송법에서 원래 예상되었던 강력한 시민당사자 메커니즘이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둘째, 피해자 참여를 둘러싼 도전이 실질적으로 캄보디아법원으로서의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 법원 자체는 자금 부족과 피해자 및 시민 단체를 위한 의미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ECCC의 공보과(Public Affair Section)와 피해자 지원과(Victim Support System)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고 협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8,000번 이상의 피해자 정보 포럼(Victim Information Forum)을 수집 한 것은 캄보디아 NGO였다(Strasser et al. 2015. 45~47을 참고하라).

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집단적 그리고 정신적 보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¹⁰⁾. 실제로 시민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한 희생자들은 대체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24.9%), 진실을 알기 위해서(22.3%)라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 육체적 정신적 치유를 위해서(13.2%),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7.6%)라고 응답하였다(Strasser et al. 2015, 44)¹¹⁾.

[그래프 1] 시민당사자가 ECCC재판에 참여한 이유



출처: Strasser et al. 2015, 44

소송절차 과정에서 공동수사판사(Co-Investigation Judges)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당사자들을 인터뷰할 수 있고 재판정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다. 시민당사자는 수사과정에서 공동수사판사에게 특별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들 시민당사자들은 ECCC에 성폭행과 젠더기반폭력에 대해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크메르 루즈 치하에서의 성적, 젠더기반폭력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시민당사자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증인, 다른 시민당사자, 혹은 자신들의 변호사를 통하여 전문가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시민당사자는 또한 자신들의 증인이나 시민당사자 혹은 전문가 명부를 재판부에 제출하여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 공판에서는 시민당사자는 단지 피고의 유죄, 무죄만을 말할 수 있고 형에

10) ECCC Internal Rule 23(1).

11) 이 설문조사는 시민당사자로 참여했던 222명에 대해서 2011~2014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대해서는 말할 권리가 없었다(Herman 2013, 467). 이렇게 ECCC는 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됨으로써 자신들이 경험했던 성적, 젠더기반범죄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재판 시작 전에는 전혀 조명받지 않았던 성적, 젠더기반범죄의 잔혹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크메르 루즈 시대의 잔혹함은 강제이주, 강제노동, 제노사이드에 그치지 않고 육체적인 측면에서의 고통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이며 정신적 피해와 문화를 파괴함으로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한 범죄가 자행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렇게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시대의 성적, 젠더기반 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드러나게 된 것은 이 범죄의 희생자인 시민당사자들의 재판 참여의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002/02사건의 시민당사자들은 모두 3,86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강제결혼 관련 시민당사자는 780명으로 전체 시민당사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이들에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포함되었다(Elander 2016, 170).

처음에 수사개시요청서(introductory submission)가 제출되었을 때¹²⁾ 시민당사자 측 변호사들의 관심은 집단결혼식에 관한 것이었다. 시민당사자 중에는 강간을 당하고 강제 결혼내에서 임신하도록 강요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여성 희생자들도 있었고 강제결혼 내에서 아내와의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성 희생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당사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당사자는 추가 범죄 수사를 요청했다. 이것은 ECCC법 5조에 명시된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명시된 살인, 몰살, 노예화, 추방, 투옥,

12) ECCC의 재판절차는 공동 검사실(두 명의 검사가 함께 사용. 한명은 캄보디아인, 다른 한명은 외국인)에서 기초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소송절차가 시작되었다. 이 기초조사에 근거하여 공동검사들은 공동수사판사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수사개시요청서(introductory submission)를 제출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법률적 조사가 시작된다. ECCC는 국제적인 재판소 가운데 독특하게 프랑스적 사법체제를 따라서 기소와 독립적인 수사판사로 이분화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법적 수사는 공동검사가 제출한 서류에 기술된 사실들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시민당사자가 법적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싶다면 즉 공동검사에 의해서 주장된 것에서 다른 사실들을 추가로 보태고 싶다면 시민당사자는 우선 공동검사를 설득하여 관계되는 자료제출을 요청 받아야한다. 법적 수사 마지막에 공동검사는 최종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것은 피고가 기소될지 아니면 기각될지를 요청하는 것이다. 공동수사판사는 최종결정서(closing order)를 내리는데 여기에는 피의자를 고소할 지, 기각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공동수사판사가 기소할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심재판부(pre trial chamber)를 열어 분쟁을 해결해야만한다. 이러한 복잡하고 난해한 본 재판 이전의 과정은 최종심리를 형성하는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는 공동검사, 공동수사판사 등의 서로 다른 행위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검사들은 수사의 범위를 통제하고 공동수사판사는 수사의 내용에 책임이 있어서 시민당사자는 추가적인 범죄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문, 강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에 의한 학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이외의 비인도적인 행동(other inhumane acts)’이 있었다는 것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특히 시민당사자는 강간과 노예화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강제 임신과 강제 결혼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의 항목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았지만 시민당사자들은 또다른 비인도적인 행동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청은 한 재판정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시간과 공간을 지나 여러 곳으로 전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조약에는 강제 임신이 언급되어 있고 시에라 리온 특별법정의 사법권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시에라리온 특별 법정에서는 강제결혼이 비인도주의적 행동을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¹³⁾.

결과적으로 002사건의 최종결정서(closing order)는 2010년 9월에 나왔다. 여기에서 크메르 루즈는 남성과 여성을 결혼하도록 강요했고 그들에게 그들의 결혼을 성관계로 완성하도록 요구했으며 이것은 자녀를 생산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인용했다. 이것은 사람들을 결혼하도록 강요하는 비인도주의적 행동이었다고 판결했고 강제결혼을 성행위를 통해서 완성하도록 한 것은 강간이며 혹은 비인도주의적 행동이라고 인용했다. 그러나 최종결정서는 크메르 루즈의 군인들과 경비대들이 노동현장과 감옥에서 여성들을 강간했음을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수사판사는 피고인을 기소하는데 있어서 사건의 법적 특징과 실제적 진실을 설명하는 최종결정서(Closing Order)를 작성하는데 여기에 안전센터와 노동공동체의 현장에서 발생한 성적 폭력이 성적 젠더기반 폭력의 형태이고 ‘결혼규제(Marriage Regulation)’의 맥락도 성적, 젠더기반폭력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였다(Elander 2016, 167-168). 이 중 결혼관련 범죄만이 크메르 루즈 지도자들에 대한 기소로 연결되었다. 공동조사판사는 크메르루즈 기간 동안 강간이 다양한 상황에서 행해졌지만 정치체제에서 강간을 조장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어떠한 정책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소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고 특징지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결혼규제’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3) 시에라 리온과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사람들을 강제하여 결혼하게 하는 행동이 성노예의 한 형태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하였다. 이 논쟁이 중요했던 이유는 ‘성노예’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고 정의되기 때문에 강제결혼이 성노예적 속성이 있다면 강제결혼 역시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에라 리온 특별재판소의 검사는 강제결혼을 성노예에 준하는 범죄라고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ECCC에서는 이러한 논쟁은 없었고 강제결혼을 ‘그 이외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하였다.

강제결혼이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재판에 붙여졌고 이렇게 크메르 루즈 치하의 강제결혼의 잔혹함이 드러나게 되었다.

요약하면 시민당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의 주장은 성범죄와 젠더기반범죄가 002사건에서 수면위로 나오게 하는데 결정적이었다. 그들의 주장과 증언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과 기소에서 결정적이었다.

V. 결 론

3년 8개월 동안 캄보디아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고 국민들을 강제이주, 강제노동과 감시 및 통제로 사지에 몰아넣었던 정권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잔혹한 정권이었지만 그들이 사용했던 젠더기반 폭력에 있어서도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력 분쟁 중에 있는 국가에서 분쟁 당사자들은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시강간, 성폭행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국제형사재판소 및 여타 국제법에서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시대의 젠더기반 폭력은 조금 다른 양상이다. 국가 전역을 통치하고 있는 한 정권이 정권의 유지 및 새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젠더기반폭력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적, 국제적 이유로 오랫동안 크메르 루즈의 이러한 만행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특히 캄보디아 사회가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중시 여기는 사회이고 전통적인 여성관이 지배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강제결혼당한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이러한 폭력의 처벌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것 자체를 수치로 여기고 감추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크메르 루즈의 패퇴 이후 30여년이 지날 때까지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침묵하였던 것이다.

탈냉전과 함께 국제 사회에서 크메르 루즈에 대한 처벌이 활발히 제기될 때까지도 젠더기반폭력은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다. 캄보디아 국내법정과 유엔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CCC의 재판이 개시되면서 젠더기반폭력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ECCC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대규모의 희생자들이 시민당사자라는 지위로 재판에 참석하여 검사나 변호인과 같은 권리로 공동검사의 최종보고서에 없는 내용일지라도 추가해서 수사하도록 하면서 젠더기반폭력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이 드러났다.

특히 국제적으로 빈번히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강제결혼의 경우는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시대에는 정부 당국에 의해서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결혼하게 하였다. 그 결혼은 대부분이 단체로 합동결혼식으로 가족이나 친지의 참석도 없고 승려의 참석도 없이 치루어지면서 캄보디아인들의 전통과 괴리시키고 사회를 파괴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강제결혼의 커플들을 감시하고 억압하여 성관계를 가지도록 강제하고 이의 결과로 임신하도록 하여 크메르 루즈가 목표로 하는 노동력의 재생산과 혁명과업을 완수한 새로운 인간의 창출을 꾀하였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의 주권자가 아니라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배치된 곳에서 노동하는 존재로 그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한 것이다. 그야말로 크메르 루즈 정권은 젠더기반범죄의 전형이 되었다.

젠더기반범죄는 다른 폭행과는 다르게 그 상흔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된다. 특히 강제결혼은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꾼다. 강제결혼과 연결된 강제임신은 임신 기간중의 고통과 더불어 출산이후의 건강의 문제,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자녀로 인한 양육의 문제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자기 신체에 대한 자율성,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자율권을 철저히 파괴하는 이러한 범죄가 3년 8개월 동안의 크메르 루즈 정권동안 이루어졌다. 아직까지 002/02 사건의 항소심이 끝나지 않아서 처벌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 봐야겠지만 재판을 통해서 이들의 고통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동감을 얻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치유는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990년 이후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국제 규범의 변화와 이를 통한 국제 레짐의 형성은 캄보디아 사례와 같이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었고 사회적인 맥락에 의해서 침묵되었던 30여년 전의 폭력을 조명하면서 희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제도를 통해서 심판받기에 이르렀다. 물론 ECCC에서 처음부터 젠더기반폭력을 처벌하려는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젠더기반폭력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시민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증언이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들의 용기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이러한 범죄가 처벌까지 갈 수 있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러한 점은 ECCC의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ECCC라는 재판정이 국제적인 협력으로 설치되었고 그 장의 마련이 국제적인 협력이라는 점이 캄보디아 사례에서 중요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캄보디아의 사례는 단지 캄보디아의 과거에 대한 청산, 희생자에 대한 보상, 정의구현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또다른 젠더기반폭력의 처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김민정. 2020. “스웨덴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젠더리뷰』 58, 62-72.
- 김양희. 2013.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와 사례연구』. 한국국제협력단 보고서.
- 부경환. 2011. 『킬링필드’의 기억과 재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 유재형. 2008.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역할과 과제” 『동아법학』 42, 533- 560.
- 정지영. 2004.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사회운동』 51,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journal&category1=55&nid=1714> (2020/11/20일 검색)
- 조영희. 2011. “크메르루즈 재판을 중심으로 본 캄보디아 과거청산의 정치동학” 『국제정치논총』 14(1), 201-221.

영문 자료

- Butler, Judith. 2004. *Precarious Life*. London: Verso.
- Carpenter, Robyn Charli. 2000. "Forced Maternity: Children's rights and the Genocide convention."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213-244.
- de Langis, Theresa. 2014. "This is Now the Most Important Trial in the World: A New Reading of Code #6 the Rule against Immoral Offenses Under the Khmer Rouge Regime." *Cambodia Law and Policy Journal* 3, 61-78.
- de Langis, Theresa ed. 2015. *Like Ghost Changes Body. Interviews on the Impact of Forced Marriage during the Khmer Rouge Regime*. Phnom Penh: Transcultural Psychosocial Organization.
- de Langis, Theresa, Judith Strasser, Thilda Kim and Sopheap Taing. 2014. *Like Ghost Changes Body: A Study on the Impact of Forced Marriage During the Khmer Rouge Regime*. Phnom Penh: Transcultural Psychosocial Organization.
- Elander, Maria 2016. "Prosecuting the Khmer Rouge Marriage." *Australian Feminist Law Journal* 42(1), 163-175.
- Gangoli, Geetanjali, Khatidja Chanther, Marianne Hester and Ann Singleton. 2011. "Understanding forced marriage: definitions and realities."

- in *Forced Marriage introducing a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perspective*, edited by Aisha Gill, Sundari Anitha, 25-45. New York: Zed Books.
- Grey, Rosemary. 2019. "Seen and unseen: sexual and gender-based crimes in the Khmer Rouge Tribunal's Case 002/02 judgement." *Australian Journal of Human Rights* 25(3), 466-487.
- Herman, Johanna. 2013. "Realities of Victim Participation : The Civil Party Systems in Practice of the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Contemporary Justice Review* 16(4), 461-481.
- Heuveline, Patrick, Bunnak Poch. 2006. "Do Marriages Forget their Past? Marital Stability in Post-Khmer Rouge Cambodia." *Demography* 43(1), 99-125.
- Hossain, Mazed, Cathy Zimmerman and Charlotte Watts. 2014.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 conflict." *The Lancet* 383(9934), 2021-2022.
- Jain, Neha. 2008. "Forced Marriage as a Crime against Humanity."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6, 1013-1032.
- LeVine, Peg. 2010. *Love and Dread in Cambodia. Weddings, Births and Ritual Harm under the Khmer Rouge*. Singapore: NUS Press.
- Lobato, Maria. 2016. *Forced Pregnancy During the Khmer Rouge Regime*. Phnom Penh: Cambodian Human Rights Action Coalition.
- Manjoo, Rashida and Calleigh McRaith. 2011. "Gender-Based Violence and Justice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Areas."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11, 11-31.
- Meng Try Ea. 2017. "Recent Population Trends in Kampuchea." in *Revival: The Cambodian Agony (1990)*, edited by David A. Ablin and M. Hood, 3-15. New York: Routledge.
- Meng Try Ea, Sorya Sim. 2001. *Victims and Perpetrator? Testimony of Young Khmer Rouge Comrades*. Phnom Penh: Documentation on Center of Cambodia
- Nakagawa, Kasumi. 2007. *Gender Based Violence Under the Khmer Rouge Regime. Stories of Survivors from the Democratic Kampuchea (1976~1979)*. Phnom Penh: Cambodian Defenders Project.

- Ponchaud, François. 1989. "Social Change in the Vortex of Revolution." in *Cambodia 1975~1978. Rendezvous with Death*, edited by Karl Jackson, 151-178.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sso, Nancy Felipe, Angela Pirlott. 2006. "Gender-Based Violence Concepts, Methods and Findings." *Annals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87, 178-205.
- Scheffer, David. 2008. "The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International Criminal Law*, 219-255.
- Stegmiller, Ignaz. 2014. "Legal Developments in Civil Party Participation at the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7(2), 465-477.
- Strasser, Judith, Thida Kim, Silke Studzinsky and Sopheap Taing. 2015. *A Study about victims' participation at the ECCC and gender based violence under the Khmer Rouge*. Phnom Penh: United Nations Trust fund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 Troy, Bridgette A. 2010. "What is Forced Marriage? Towards a Definition of Forced Marriage as a Crime against Humanity." *Columbia Journal of Gender and Law* 19(2), 539-590.
- Williams, Sarah, Jasmine Opdam. 2017. "The Unrealised potential for transformative reparation for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 Sierra Leon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21(7), 1281-1301.
- Wing, Adrien Katherine and Sylke Merchan. 1993. "Rape, Ethnicity and Culture: Spirit injury from Bosnia to Black America." *Columbia Human rights Law Review* 25, 1-3.
- Ye, Beini. 2011. "Forced Marriages as Mirrors of Cambodian conflict Transformation." *Peace Review: A Journal of Social Justice* 23, 469-475.
- Rome statut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Law on the Establishment of the Extraordinary Chambers(ECCC설립법)
 ECCC internal rule
 ECCC. 2010. Closing Order, 15 September, <https://www.eccc.gov.kh/sites/default/files/documents/courtdoc/D427Eng.pdf> (2020/10/10일 검색)

- ECCC. 2016. Transcript of Trial Proceedings Public (Case 002/02), 24 August, https://www.eccc.gov.kh/sites/default/files/documents/courtdoc/2017-01-04%2014%3A41/E1_463.1_TR002_20160824_Final_EN_Pub.pdf (2020/10/10일 검색)
- ECCC. 2017. Co-Prosecutors' Amended Closing Brief in Case 002/02, 2 October, https://www.eccc.gov.kh/sites/default/files/documents/courtdoc/%5Bdate-in-tz%5D/E457_6_1_1%20_EN_Part1%20%281%29.pdf (2020/10/10일 검색)
- ECCC. 2019. Case 002/02 Judgement, (dated November 16, 2018) 27 March, <https://goo.gl/Yfe5S5> (2020/11/02일 검색)
- <https://www.gov.uk/government/topical-events/sexual-violence-in-conflict> (2020/10/12일 검색)
-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journal&category1=55&nid=1714> (2020/10/10일 검색)
- <https://www.eccc.gov.kh/en/case-load> (2020/10/10일 검색)
- <http://www.hengheng.de/kim/ebooks/Victims&perpetrators.pdf> (2020/12/01일 검색)

Abstract

The Role of International Regime in Punishment for Gender Based Violence under the Khmer Rouge

Minjeoung Kim ■ University of Seoul, Dep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Khmer Rouge regime in Cambodia was a brutal regime in which a quarter of the people were killed in three years and eight months. Such cruelty was not properly punished until almost 30 years after the regime's defeat.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the Cold War, domestic political context,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Cambodian state was passive about punishment. Along with the change of international ord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tively tried to judge the Khmer Rouge regime, and the UN and the Cambodian government jointly established the Extraordinary Chamber of the Cambodia Court (ECCC), and the judgment was finally unfolded. In this process, the situation of gender-based violence under the Khmer Rouge, which was hidden in a particularly social context, was revealed and has been punished for anti-humanitarian acts. This example of Cambodia shows a good example in which the international regime finally judges when gender-based violence committed by the state is socially silent due to the nature of the violence.

Key Words: Khmer Rouge, Forced Marriage, Forced Pregnancy, Extraordinary Chamber of the Cambodia Court(ECCC), Civil Party, International Regime

□ 논문접수일: 2021년 1월 20일, 심사완료일: 2021년 2월 18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2일